

제334회 정례회
2014. 9. 30(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9. 30 (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9월 5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9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9월 16일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가. 제안이유

-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 분야의 전문화와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분리하고, 자구의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 개정: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 과학기술 진흥 관련 조문 분리·수정

(안 제1조 ~ 제14조)

- 과학기술 진흥 관련 조항 및 문구 삭제

○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나기성)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 진흥 분야의 전문화와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분리하는 내용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이유와 비용추계표에 따라 4차년도와 5차년도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전략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산업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을 중시하고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산·학·연·관 협력 증진, 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지원 사업의”를 “사업의”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사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산업화 지원 사업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
5. 세미나, 해외 교류·시장 진출, 홍보 지원 사업
6. 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판매촉진 사업
7. 신사업 기획 및 연구 사업
8.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와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9. 국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원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전략산업육성 및 과학기술진흥”을 “전략산업 육성”으로 하며, 같은조 제5호 중 “경영·지원사항”을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및 제6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도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같은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통상국장 및 바이오환경국장”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같은항 제1호 및 제4호 중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를 각각 “지역경제”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회의는”을 “위원회 회의는”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을 “회의는”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충청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과학 기술진흥시책을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전략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2. “지역연구개발사업”이란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 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 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과학관”이란 「과학관 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5. “연구개발과제”란 지역연구개발사업 (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u>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전략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전략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 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산업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도지사가 전략 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 <삭 제> <삭 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시책을 중시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과 자체적인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관 협력 증진, 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학기술분야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제5조(전략산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삭 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을 중시하고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산·학·연·관 협력 증진, 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전략산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

3. 첨단기술, 첨단제품의 산업화 및
첨단 산업 정보화 지원사업
4. 전략산업 관련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5. 전략산업 관련 세미나, 해외 교류 ·
시장 진출, 홍보 지원사업
6. 전략산업 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판매촉진 사업
7. 전략산업 개발 단계별 평가 · 시험
비용 지원
8. 국내외 산 · 학 · 연 네트워크와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9. 국제공동연구개발과 협력사업
10.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
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6조(과학기술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과
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
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
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4. 과학기술 협력 국 · 내외 지원 사업
 5. 지식재산권 발굴 육성 사업
 6.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 사업
 7. 그 밖의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지원 사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산업화 지원
사업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
5. 세미나, 해외 교류 · 시장 진출, 홍보
지원 사업
6. 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판매촉진
사업
7. 신사업 기획 및 연구 사업
8. 국내 · 외 산 · 학 · 연 네트워크와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9. 국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 사업의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참여기관
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① 도지사 <삭 제>
는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과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관련 경진대회 및 지역
과학축전
2.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개최
3.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
4. 과학관 등 과학문화 시설 확충
5. 과학관 육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의 과학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지원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 <삭 제>
영)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도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3.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 조정

4. 도내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 제시 및 과학기술진흥 업무 지원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정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사업외 예산이 수반되는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전략산업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5. 벤처기업 창업, 기술·경영·지원사항
6. ~ 7. <생 략>
8. 기타 전략산업 및 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한 주요사항 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

제9조(지원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

1. 전략산업 육성 -----

2. ~ 4. <현행과 같음>

5. -----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명,

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 통상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자

2. ~ 3. <생 략>

4. 그 밖에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④ 당연직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신 설>

----- 명 ----- 명 -----

② ----- 정무부지사 -----

③ -----
----- 경제 통상국장 및 바이오환경국장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

1. 지역경제 -----

2. ~ 3. <현행과 같음>

4. ----- 지역경제 -----

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명 ----- 두며 -----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② 회의는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회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업정책 분과위원회
2. 과학기술진흥 분과위원회
3. 전략산업 인력양성 분과위원회

<신 설>

제15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략산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비밀의 누설금지) -----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u>제17조(포상)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u> <u>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충청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 <u>제19조(시행규칙) -----</u> -----
---	--

관련법령 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업위치: 도내 일원
- 사업기간: 2012~ (매년 지속 추진사업)
- 내 용: 충청북도의 전략산업 육성·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3. 관련조문: 안 제5조(전략산업 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나. 추계 결과

- 중소벤처기업육성: 84억원(국비 34, 도 42, 기타 8)
- 산학협력활성화: 1,634억원(국비 1,124, 도비 152, 시·군비 38, 기타 320)
- 지역전략산업공동사업: 1,097억원(국비 683, 도비 275, 시·군비 41, 기타 98)
- 산업자원 안전관리: 4억원(도비 3, 기타 1)

다. 재원조달방안: 2,819억원

- 국비 1,841억, 도비 472억, 시·군비 79억, 기타 427억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붙임

6. 작성자: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장 이 두 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12년까지)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0	0	0	0	0	0
		0	0	0	0	0	0
세 출		73,581,000	51,103,000	50,626,000	53,281,000	53,281,000	281,872,000
중소벤처기업육성		0	2,145,000	2,075,000	2,075,000	2,075,000	8,370,000
산학협력활성화		63,573,000	20,740,000	20,721,000	29,198,000	29,198,000	163,430,000
지역전략산업공통사업		10,008,000	28,128,000	27,740,000	21,918,000	21,918,000	109,712,000
산업자원 안전관리		0	90,000	90,000	90,000	90,000	360,000
재원 조달		73,581,000	51,103,000	50,626,000	53,281,000	53,281,000	281,872,000
의존 재원	소 계	14,635,000	18,820,000	19,718,000	25,277,000	25,277,000	103,727,000
	보조금	14,635,000	18,820,000	19,718,000	25,277,000	25,277,000	103,727,00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9,222,000	9,633,000	9,361,000	9,468,000	9,468,000	47,152,000
	지방세	9,222,000	9,633,000	9,361,000	9,468,000	9,468,000	47,152,0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25,255,000	14,602,000	13,979,000	13,300,000	13,300,000	80,436,000
광특회계		25,255,000	14,602,000	13,979,000	13,300,000	13,300,000	80,436,000
시·군비		2,455,000	1,471,000	1,447,000	1,263,000	1,263,000	7,899,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22,014,000	6,577,000	6,121,000	3,973,000	3,973,000	42,658,000